

# 창의경제의 지식재산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전략은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점추진과제에서, 먼저 지식재산 창업활성화를 보면, 창업주체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을 둘 수 있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소」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을 활성화한다.

## 지식기반의 선진국으로 도약

정부는 창의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고, 세계 주요국과 선진기업들은 지식재산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계에 대응한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을 하락 대응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창의사회로의 전환 및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것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가 지식재산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특히 등 지재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

준에 이르렀으나, 강한 지재권 창출·확보는 미흡한 편이다. 총 연구개발 투자(정부+민간) 규모는 31.3조원 ('07년)으로 세계 7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이나, 세계 상위 10위 특허중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확보한 특허기술은 전무하다.

연구결과에 따른 기업의 사업수익이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창의성이 발현되는 풍토가 미약하다.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부채로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

## 선진국 기업 창의자본 조성

최근 선진 기업들은 '창의자본'을 조성하여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를 설립·운영 중이다. NPEs(Non-Practicing Entities)는 실질적 생산·서비스 없이 특허권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수행(Intellectual Ventures

등 220여 기업 활동)한다.

대학·공공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에 제약이 많고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엄격한 설립요건·사업영역 제한으로 설립초기 현금자본 부족 및 설립규모·영리활동에 제약(08년 이후 6개사 설립, 자본금 평균 25억)이 있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정부의 사업화 지원예산이 부족하다. 정부 R&D 예산중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비율(%)은 ('07년) 1.1 → ('08년) 0.7이다.

둘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가 취약하다. 소관 부처별로 추진중인 지재권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부재하다.

지재권 분쟁·소송의 급증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및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 특히 소송 증가 현황(건)은 ('03년) 9,445 → ('05년) 14,231 → ('07년) 19,537이다.

#### 지식재산 인프라 부족

셋째, 지식재산 인프라 부족이다.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 및 불법유통 확산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수출손실은 약 171억\$('05년, 산자부)이다.

지식재산의 가치 인정에 인색하고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문화가 부족하여 국내에서의 지재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재권 침해가 심한 국가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6.7%, 소비자의 36%는 위조상품 구입 의향을 표시('07년 문화부·특허청)했다.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전략은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점추진과제에서, 먼저 지식재산 창업활성화를 보

## 비고 목표

###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기술무역수지(수출/수입) 개선 : '07년 0.43 ⇒ '12년 0.79
- 저작권산업 규모 확대 : '07년 세계 9위 ⇒ '12년 세계 5위
- 국제 주도력 향상 : IP 3국 ⇒ IP 5국(한·미·일·중·EU) 체제

## 정책 방향

### 지식재산의 경제 산업적 활용 촉진

### 글로벌 수준의 지식 재산 법·제도 마련

###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선진화

## 중점 추진 과제

- ①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 ② 지식재산 금융 시스템 구축
- ③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 ④ 親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 ⑤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질서 확립
- ⑥ 특허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
- ⑦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 ⑧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
- ⑨ 지재권 분쟁 대응 체제 구축
- ⑩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 ⑪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마련

면, 창업주체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을 들 수 있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소」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을 활성화한다.

###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제도 개선에서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기술현물출자 비율 50→20%)하고 사업영역을 확대(자회사 관리→직접 사업화, 펀드 결성·운용 등)한다. 지원 강화에서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 「기술가치평가-사업화 기술개발-투자연계」 등을 일괄 지원(2013년까지 총 200억 목표)한다. 대학생 등 청년기업 지망생 대상 창업 마인드를 확산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글로벌 기업가 센터」 설립 확대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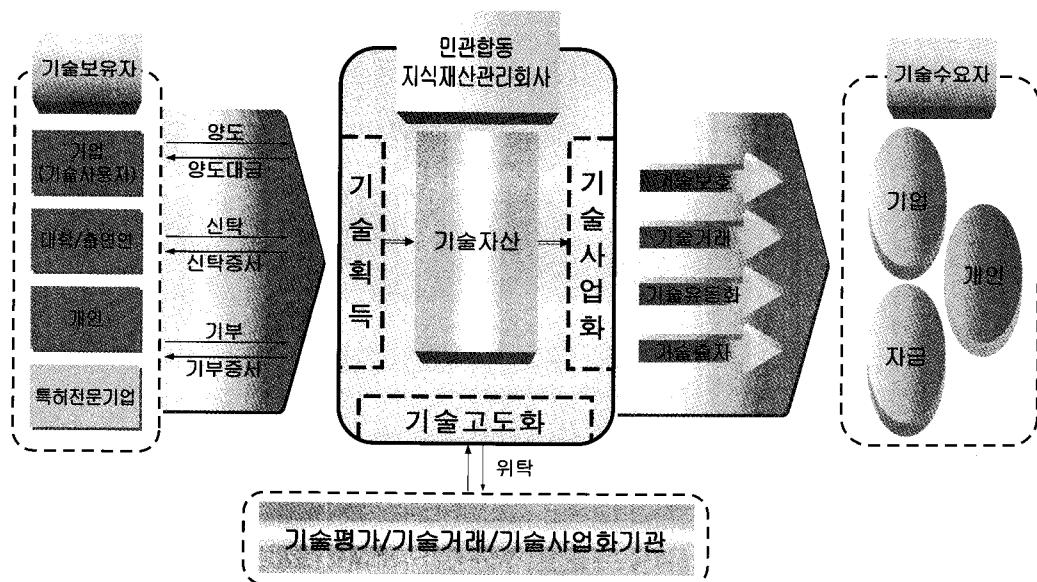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창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외 주요국의 유망지역에 신성장동력 분야 등 유망업종에 특화된 전략적 글로벌 기술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재권 보유기업의 해외진출시 「국제표준-지재권 출원-신기술인증」을 일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금융시스템 구축과제에서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창의자본」 육성을 들 수 있다. 「창의자본」 조성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매입, 권리화한다. 민관합동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설립으로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촉진한다.

###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범사업('09년)으로 기업주도의 창의자본을 설립(200억원 규모)하여, 시장의 적극적 동인을 추동(향후 1천억원 구성 목표, 특허청)한다. 1단계('10년)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을 획득·관리하는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2단계('11년 이후)는 민간의 전문성 확보, 비즈니스 성공사례 도출, 기업의 투자 참여 수요를 고려하여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단계적으로 최대 5천억원 목표) 설립 검토·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민관공동으로 2,000억엔(약 2.6조원)을 출자하여 산업혁신기구(15년 한시적 기구) 설립을 추진중이다.



##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창업

'창의자본' 조성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매입, 권리화한다. 민관합동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설립으로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촉진한다.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투·융자 자금 공급 확대를 들 수 있다. 민간 금융자금과 정부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협조융자(Co-Finance)를 도입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펀드 활용 및 조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 투자 분야·규모 등의 특성에 맞도록 자금공급을 확대·최적화한다.

### 국가예산 중 사업화 비율 확대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과제에서 국가 R&D예산 중 사업화예산 비율 확대를 들 수 있다. 정부 R&D 예산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예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 이전·활용의 효과성을 극대화 한다.

정부 R&D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08년 0.7%에서 '13년까지 3%로 확대('10.1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정부 R&D 예산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99~'08년간 연평균 12.7% 증가),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비중은 감소('07년 1.1% → '08년 0.7%)했다.

지식재산 대형 R&BD를 추진한다. 기업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지식재산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술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는

개발기술의 사업화 기회, 상품화 개발 등 양산前 단계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R&BD 예산 ('09년 110억 → '11년 1,900억 목표), 규모(소형(7.5억)→중·대형(25억))를 증가한다.

### 원스톱 솔루션 제공

대학·공공연구소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 기술의 발굴 및 전략 특허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망기술 발굴→전략수립→시장분석→마케팅」등 창출·사업화 전(全) 단계에 걸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등의 유망 특허기술의 전략 특허화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10년 26개 대학 공공(연)을 대상으로 유망연구실을 지정관리할 것이다.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관리와 사업화 역량의 제고를 위해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사업의 강화 및 확대한다.

친 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의 경우, 지식재산 소송(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민사사건과 동일한 관할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분쟁 장기화 및 비효율이 발생된다.

###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 등을 고려,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주요 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 산하에 자문위  
원회 설치, 관할제도  
개선안 마련 등 추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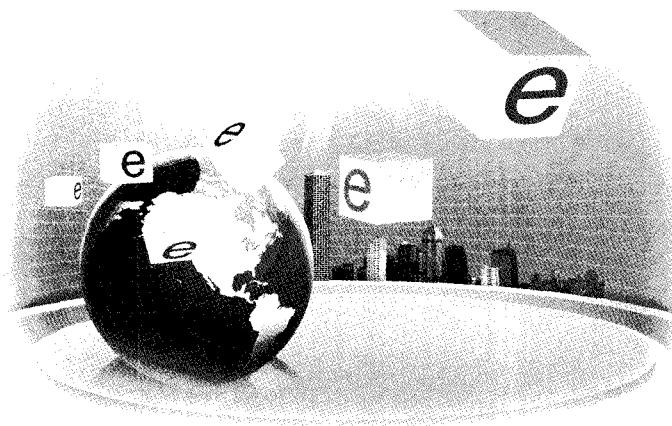
대안적 분쟁해결 시  
스템(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을 활성화할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을 제  
공('09.12월)한다.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분쟁에  
한정하여 운영되는 “중재” 제도를 저작권·산업재산권  
을 포함한 지재권 일반으로 확대한다.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질서 확립과제를 위해 특허권  
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지  
재권 분쟁 제기자의 지재권 보유 현황, 주요 분쟁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을 제  
고한다. 특허권 권리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국제적 논의를 확산한다.

#### 공정한 저작물 유통 환경

공정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 불공정 거래관  
행에 대한 자율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자, 서  
비스 사업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 구  
성·운영('09.9월)한다.

저작물의 종류, 기술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  
자 제작 콘텐츠(UCC) 등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가이  
드라인을 제공('09.12월)할 것이다. 공정이용이란 저  
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  
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누구나 저  
작물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특허권·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에 대한  
소유권 배분을 합리화할 것이다. 산학연  
등의 공동연구 결과  
물(특허)의 활용성 제  
고와 그로 인한 이익  
배분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해 합리적인 소  
유권 배분방식을 모  
색한다. 공공 소프트  
웨어 사업에 따른 지재권 귀속 제도를 사업자의 상업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특허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콘텐츠가 제값 받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방송콘  
텐츠 사업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CATV  
PP가 SO로부터 방송수신료의 25% 이상('07년 17%)  
을 지급받도록 조치한다.

특허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과제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특허·상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특  
허·상표의 출원 및 유지에 요구되는 형식요건을 완화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11.12월)한다.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여, 신속한 출원 및 조기  
권리획득을 지원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09.12월)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2개국에 공통출원한 출원건에  
대해 한 국가에서 특허 결정시, 상대국은 그 심사결과  
를 활용하여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효과는 국내기  
업의 미국특허 심사대기 기간 25개월 → 4개월로 단축  
된다.

## 특허 5강 공조체제 추진

특허 5강(IP5) 협력을 통한 국제특허제도를 선도하는 점이다. 한·미·일·유럽·중 5개국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특허 5강(IP5, Intellectual Property 5) 협의체는 세계 특허 5대 강국 간 특허심사공조를 위해 '08.10월 제주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다.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모범적 국제활동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기여한다. 우리나라 ‘3트랙 심사제도’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한 개혁모델로 제시하여 국제 특허제도의 발전을 선도('09. 12월)할 것이다.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과제에 있어, 제정 필요성 및 추진체계를 들 수 있다. 미국은지재권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법(PRO-IP 법) 제정('08년)하고, 일본은지재권 창출·보호·활용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02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일본과 유사한 지식재산법안('05.11.8)과 지식 재산기본법안('06.7.7)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사항을 논의한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법안 주요 내용(안)은 지식재산창출,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하여 법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 한다.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과제는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들 수 있다. 국경조치 대상 지재권 침해의 범위 확대 및 기관간 공조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범위를 현행 상표·저작권에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으로 확대 (한·EU FTA 결과를 반영)한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을 유연화 한다.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위반시 물품의 몰수 및 폐기처분, 과징금 증과 등 제재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09.12월)한다.

## 온라인 불법 단속 강화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저작물 및 위조상품에 대한 온라인 24시간 추적시스템 구축하고, ‘저작권 포렌식 센터’ 운영으로 저작권 수사의 전문화·과학화('10.6월)한다.

지재권 분쟁 대응 체제 구축과제는 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사전 예보시스템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분석, 소송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사전 예보 한다.

특허분쟁 대응협의체 운영은 분쟁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민관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 확대된다. 대응 시스템 구축은 경고장 수령 등 분쟁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원팀을 구성한다.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동남아, 중국, 북미 등 우리 지재권 유통이 활발하고 분쟁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지재권 지원 전문기관을 확대 설치('10.12월)한다.

## 해외전시회의 특허분쟁 최소화

수출기업 및 해외전시회 참여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 사전조사를 지원하여 예측 못한 분쟁 발생을 최소화('10.12월)한다. '09년 시범실시(5개사) → '10년 본격실시(40개사)(특허청·무역협회 공동)한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소송 리스크를 경감해 주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실시('09.12월)한다.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과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학·법률·경영 분야의 융합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재권 전문학위과정 개설 및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설립('10년)한다.

차세대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 육성은 창의적인 소수정예의 발명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으로 육성한다. 특히 청, KAIST, POSTECH과 공동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09.11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지원체계를 구축('10.3월)한다.

### 홍보 전개로 인식 제고

시민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을 제고한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지재권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지재권 및 교육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 구성·운영을 통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지재권 관련 내용의 포함을 추진('09.9월)한다. T/F 구성은 교과부, 법무부, 지경부, 문화부, 특허청 등이다.

친(親)지재권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소비자 참여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정부·지자체·언론·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가칭) '대한민국 지식재산 클린 365일 운동' 추진('09.9월)한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이용하기', '내 장바구니에서 짹퉁 빼기', 백화점내 '짬통전시회' 개최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09.9월)한다.

지식재산 유통·사업화 정보인프라 마련과제에서,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지식재산의 수집·유통 체계를 일원화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술자산의 활용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한다.

### 국제 지식재산 거래 촉진

국제 지식재산 거래 촉진을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유럽권 상용화 연구개발 네트워크

(EUREKA), 유럽기술혁신 네트워크(EEN) 등 세계적인 지식재산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자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09.11월)한다. EUREKA는 현재 38개 정회원국, 2,623개의 산·학·연이 약 700개 R&D프로젝트에 14억유로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유럽권 상용화 R&D 네트워크이고, EEN은 44개국 600여 기술거래기관 참여한 세계 최대 기술거래 네트워크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저작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작권 정보의 통합 수집·관리 및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실시간으로 저작권 정보의 등록·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업자들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한다.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 분산되어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를 통합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특허 자동평가시스템 개발

특허 자동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특허활용을 촉진한다. 특허문헌의 정보를 활용하여 특허의 품질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자동평가시스템을 개발('09.12월)한다. 전문가 선별평가 대비 70%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대량의 특허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대효과를 보면, 기술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다.

기술무역 수지비는 ('07년) 0.43 → ('12년) 0.79로 올라갈 것이다. '07년 우리나라 기술수출 22억불, 수입 51억불로 기술무역수지는 29억불 적자이다.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보호 순위 ('08년) 세계 37위 → ('12년) 세계 15위가 목표이다.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증대로 생산성(백만원/인)은 ('08년) 57 → ('12년) 81이 될 것이다. 저작권 산업 확대로 산업 규모가 ('08년) 세계 9위 → ('12년) 세계 5위로 될 것이다.